금융위원회 / 금융감독원	# 보 도 참 고	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/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'21.9.24.(금)

책 임 자	금융위 FIU 기획협력팀장 전 은 주(02-2100-1720)	담 당 자	석 정 연 사무관 (02-2100-1788) 김 상 협 사무관 (02-2100-1736)
	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이 길 성(02-3145-7500)		박 상 현 팀장 (02-3145-7502)

제 목 : 9.24일 18:30 현재, 총 33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.

◈ **9.24일 18:30 현재, 총 33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.**

- **가상자산 거래업자 24개사 신고접수, 이 중 1개사 신고수리 결정**
- **기타 사업자 9개사 신고접수**

◈ **정부는 신고접수된 사업자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, 이용자들이 신고수리된 사업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.**

□ **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**(FIU)**은 9.24일 18:30** 현재 **33개 가상자산사업자**(거래업자 24개사, 기타 9개사)에 대한 **신고 접수를 완료**하였습니다. (신고수리 결정 1개사 포함)

○ 가상자산사업자 **신고접수는 9.24일 자정**까지 진행되며, 추가로 신고접수하는 사업자의 **신고 현황은 FIU 홈페이지**에서 **확인**하실 수 있습니다.

* 금융정보분석원(FIU) 홈페이지 : www.kofiu.go.kr

<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현황 (9.24일, 18:30시) >

구분	신고요건	ISMS 인증 회사수	신고 동향		영업 동향
			상담	접수	
거래업자	ISMS+실명계정	4		4	4개사 원화·코인마켓 신고 → 정상 영업중 **이 중 1개사는 신고수리**
	ISMS 획득	25	5	20	25개사 코인마켓 신고(예정) → 정상 영업중

* 신고접수 사업자 명단 ☞ 별첨1

□ **가상자산 거래업자**의 경우 **정보보호 관리체계**(ISMS) 인증을 획득한 **29개사 모두 신고접수**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 9.21일 기준, **29개사**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**체결금액의 99.9% 수준**

** 참고로, **미신고 거래업자**의 **원화예치금은 41.8억원** 수준(9.21일 기준)으로 파악

○ 금융정보분석원(FIU)·금감원은 **3개월 이내**에 심사하여 **수리여부를 결정**할 예정이며, **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**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(9.24일, 18:30시) >

구분	ISMS 인증 회사수	신고 동향	
		상담	접수
기타 (지갑서비스업자, 보관관리업자 등)	14	4	9

* ISMS 인증을 받은 기타 사업자 중 1개사는 신고접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□ 그 외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,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**기타 사업자**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**9개사가 신고접수**를 **완료**하였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별첨1 **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(9.24일, 18:30)**

1. 가상자산 거래업자

구분	기업명	서비스명	합계
신고접수	두나무 주식회사	업비트	24개
	주식회사 빗썸코리아	빗썸	
	㈜코인원	코인원	
	주식회사 코빗	코빗	
	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	플라이빗	
	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	비블록	
	㈜오케이비트	OK-BIT	
	주식회사 프라뱅	프라뱅	
	㈜플랫타이엑스	플랫타익스체인지	
	주식회사 피어테크	GDAC	
	주식회사 포블게이트	포블게이트	
	㈜코어닥스	코어닥스	
	주식회사 골든퓨쳐스	빗크몬	
	주식회사 텐앤텐	텐앤텐	
	㈜코엔코코리아	코인엔코인	
	㈜뱅코	BORABIT	
	주식회사 뉴링크	캐셔레스트	
	와우팍스익스체인지 주식회사	wowPAX	
	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	에이프로빗	
	오션스 주식회사	프로비트	
	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	오아시스	
	주식회사 더블링크	Metavex	
	㈜스트리미	GOPAX	
	후오비 주식회사	후오비	

2. 기타 (지갑서비스업자, 보관관리업자 등)

구분	기업명	서비스명	합계
신고접수	㈜한국디지털에셋	KODA	9개
	주식회사 겜퍼	비트로	
	㈜헥슬란트	토큰뱅크, 옥텟	
	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	KDAC	
	주식회사 카르도	볼트커스터디	
	㈜네오플라이	nBlocks	
	주식회사 하이퍼리즘	하이퍼리즘	
	㈜델리오	델리오	
	주식회사 위메이드트리	WEMIX	

별첨2 **미신고 사업자 영업종료 및 금융거래종료 관련 Q&A**

1. 가상자산 관련 영업 외의 별개 사업(ex, 인터넷쇼핑몰)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부 폐업해야 한다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해서 사업자가 사업자 번호를 말소해야하는지?

□ 가상자산 관련 **영업 외의 별개 사업**(ex, 인터넷쇼핑몰)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**가상자산 관련 영업만**을 **종료**하면 되고, 다른 업종의 **영업행위**를 **종료할 의무 없음**

2.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9.2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, 영업종료가 확인되면 되는 것인지, 폐업신고를 해서 사업자번호를 말소를 하고 다시 신규사업자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?

□ 특정금융정보법 상 **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**는 **형사 처벌 대상**(법§17①, 5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)으로 **불법**이므로 **가상자산영업을 종료해야 함**

○ 단, 가상자산 **영업종료**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**폐업신고***또는 민·상법 상의 **법인 해산** 등을 **의미하지는 않음**

* 단, **미신고 사업자**의 **사업자등록증 업종 기재** 상 **가상자산 관련 내용 기재**가 있을 경우에는 **사업자등록** 상 **업종 폐지**(변경)는 **필요**

○ 현재 **가상자산 사업**만을 **영위**하고 관련 사업을 **영구적**으로 **종료**하고자 하는 **사업자의 경우**에는 **폐업신고**가 **필요할 수 있음**

□ 만약 **기존** 사업자가 **미비요건 보완** 후 **신규신고**를 희망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**종전 영업**을 **신고 기한**(9.24일) **후부터 종료했음**을 **객관적인 증빙자료***를 통해 **입증**해야함

* **(예) 감독당국의 권고사항 이행 내역, 외부 회계법인**에 의해 **검토**된 **회계자료 제출 등**을 통해 **가상자산 관련 매출액 미발생 사실 입증** 등

3. 9.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영업 외의 다른 사업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을 위해 금융거래가 필요한데, 은행들이 집금계좌 외에 사업운영 계좌까지 일괄적으로 막는 것이 적절한지?

□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하지 않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종료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**금융회사의 의무**에 해당함(법§5조의2④)

□ 한편, 가상자산 **영업을 종료**하고 **감독당국의 권고사항***에 따라 **이용자 자산반환** 등 기존 거래관계를 정리 중인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가상자산거래를 **영업**으로 하는 **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**라고 보기 어려우므로,

* 국무조정실 '21.9.13. 배포 "**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·영업종료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**" 보도자료 中 붙임 「**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영업종료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**」 참조

○ 가상자산 관련 **영업을 종료한 사업자**는 금융거래종료 **대상**에 **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**

□ 따라서, **가상자산 영업을** 종료한 **미신고 사업자**에 대하여는 **금융회사**가 **모든 금융거래**를 **종료할 것이 아니라,**

① **음성적 영업재개 방지**를 위해 **신규 집금계좌개설 제한하고,**

② **기존 집금계좌***에 대한 **입금정지 원칙**은 **유지**하되, **이용자 예치금 반환**을 위한 **출금**만 **허용**하는 것이 **타당**하며,

* 운영계좌와 달리 **기존 집금계좌**는 **가상자산 거래소 영업만을 위해 이용자 투자금**을 **예치하는 계좌**로 신규 영업 종료 시 **추가 입금이 불필요**

③ **이용자 예치금 반환**을 위한 **사업자에 의한 입금***등에 대한 **예외적 허용**도 필요

* **일부 사업자**의 경우 기존 이용자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운용하여 **이용자 예치금 반환**을 위한 **기존 집금계좌 상 예치금 부족**으로 **일시적인 입금 허용을 요청**하고 있음(**가상자산을 금전 교환 후 사업자 명의로 기존 집금계좌에 입금할 예정**)

4. 금융회사들은 미신고 사업자가 고객 출금지원 등 영업종료 후 후속 조치 중인 경우 금융거래를 종료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?

□ 특금법 상 **금융회사등**은 **사업자의 미신고 사실**을 **확인**할 경우 **거래종료 의무**(법§5조의2④)가 **존재**하나,

○ 가상자산 **영업을 종료**하고 **감독당국 권고사항을 이행**하는 미신고 **사업자**는 **가상자산거래를 영업*****으로 하는 자로 보지 않을 수 있음**

* 행위의 반복, 계속성, 영업성 등의 유무, 그 목적이나 규모, 횟수, 기간,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(대법원 2012도5525판결)

○ 따라서 **금융회사**가 **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**한 **미신고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반환** 등에 **협조**하기 위해 **출금 등 금융거래를 제공** 하는 경우 **거래종료의무 위반**이라 **볼 수 없음**

□ 다만, **금융회사등**은 **집금계좌 출금과정**에서 **이상거래*** **발견** 시 **FIU 보고시스템**을 통해 신속한 **의심거래보고**** 필요

* 거액인출, 거액이체, 잔고급감, 동일인에게 다수 이체 등

** 「범죄수익은닉규제법」§5① 해당 시 지체없이 수사기관 신고 후 의심거래보고